

영화 <베테랑>을 통하여 알아보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함정수사!” 함정수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카드뉴스에서는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의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나 수사협력자가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서는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체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함정수사의 유형

1. 기회제공형

범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기법의 유형을 말한다.

2. 범의유발형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락을 통하여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수사기법의 유형을 말한다.



Q. 함정수사가 위법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A. 함정수사의 적법성에 관해서 우리나라 관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

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즉 판례는 범의가 없던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범의유발형’은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 속 함정수사 장면을 통하여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영화 베테랑(2015년)의 초반부에서는 경찰인 서도철과 미스봉이 고객으로 위장한 후, 불법 외제차 브로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체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합정수사는 적법할까요?

영화 <베테랑>의 합정수사는 본래 범의가 있던 불법 브로커에게 위장 접근하여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회제공형 합정수사에 해당합니다.

‘기회제공형 합정수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알아봅시다.

(1) 위법한 합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및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합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

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합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합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합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위법한 합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에 관하여 대법원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합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즉, 영화 <베터랑>에서 경찰이 고객으로 위장 후 불법 차 브로커에게서 차를 사려고 했던 방법으로 수사한 것은 ‘기회제공형’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제공형’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알아봅시다.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측은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Q. 위법한 함정수사라면, 후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 (=무효)에 관하여 대법원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672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위법한 함정수사를 통해 제기된 공소는 무효로 본 것입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